

2021

시흥시민을 위한 복지정보안내서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 소개

협의회 소개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는 2000년 4월에 설립된 후 2005년 6월에 사회복지법인으로 재창립된 법정단체이자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시흥시 사회복지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립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법인의 허가) 및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목적

시흥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교육·훈련사업을 통하여 복지 실무자의 실천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사업

1. 협의조정사업

- 총회·이사회·회장단 회의
- 신년인사회, 성과발표회 개최
- 지역 복지관련 각종 위원회 참여

2. 조사연구 및 정책활성화 사업

- 복지정보 조사 및 정보안내서 제작
- 복지정책 포럼 및 간담회

3. 자원개발관리사업

- 복지자원개발 및 배분사업 (후원물품 배분, 결연장학금 지급 등)
- 좋은이웃들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 사업 등

4. 사회복지증진사업

-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 민·관합동워크숍
- 행복한 추석 만들기 사업

5. 홍보출판사업

- 사회복지시설/단체/기관 편람
- 웹진 발행, 홈페이지 및 SNS 운영

6. 교육훈련사업

- 사회복지 종사자 실무역량강화 교육
- 시민을 위한 복지교육(강연)

7. 시흥시사회복지정보센터 사업

-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웹인포 운영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VMS)

8. 시흥시이동복지빨래방 사업

- 이동세탁 및 건조 서비스
-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시흥시사회복지정보센터 소개



정보센터 소개

시흥시사회복지정보센터는 시흥시민들에게 필요한 각종 복지정보를 하나의 망으로 구축하여 통합관리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웰인포 (Welinfo) 사이트 이용방법

우리동네 시흥시의 유용한 복지정보들을 알려주는 사회복지정보센터 웰인포(Welinfo)! 인터넷과 모바일 접속을 통하여 필요한 복지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모바일 접속

스마트폰으로
아래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또는 스마트폰 인터넷 주소창에
<https://siheung.welinfo.kr>을 검색해주세요.

인터넷 접속

인터넷 검색장에

시흥시사회복지정보센터



시흥시웰인포



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

<https://siheung.welinfo.kr>을 검색해주세요.



시흥시이동복지 빨래방 소개

시흥시이동복지빨래방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일상생활 상의 불편을 덜고 위생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이동복지빨래방 차량을 이용하여 찾아가는 세탁 및 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입니다.

이용안내

- 이용료 : 무료
- 운영시간 : 화~금 운행 / 09:00~16:00
- 장소 : 시흥시 동행정복지센터(19개소), 경로당 등(신청대상자 거주지 주변)
- 서비스대상 : 시흥시 65세 이상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홀몸노인, 자체세탁이 어려운 장애인, 시흥시 노인·장애인·아동 등의 지역복지시설에서 의뢰한 분

시흥시민을 위한 복지정보안내서를 펴내며

“사회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흥시민을 위한 복지정보안내서”를 발간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사회복지의 역할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므로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시민들이 복지의 주체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사회복지 정책과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의 위기가 복지공동체를 강화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가 필수적입니다. 본 안내서에 수록된 복지정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복지권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시흥시민과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을 위하여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복지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안내서가 발간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임병택 시흥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흥시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의 복지정보전문위원회 위원들과 시흥시사회복지정보센터 담당자가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장 | 리은주

시흥시민을 위한 복지정보안내서를 펴내며

“시흥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흥시는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한시생계지원’
지급 등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재난을
함께 극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장 | 임병택

그러나 아무리 좋은 복지 정책이라도 홍보와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시흥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시흥시민을 위한 복지정보안내서〉를 발행합니다.
시민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 정보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안내서 제작을 위해 애쓰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안내서를 통해 우리 시흥시민 모두가 자신의 사회적 권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주위의 소외된 이웃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로 설립 21주년을 맞은 시흥시 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사회복지 중심 기관으로
서 사회복지 증진에 더욱 앞장서 주시길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시흥시민을 위한 복지정보안내서를 펴내며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중심 열린의정’의 실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흥시 의회 의장 박춘호입니다.

시흥시의회 의장 | 박춘호

먼저 시흥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시
흥시사회복지협의회에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며, 「시
흥시민을 위한 복지정보안내서」 발간에 힘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흥시는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여러 지원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복지정보들이 「시흥
시민을 위한 복지정보안내서」에 문제영역 및 인구집단별로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습
니다.

이는 분명 많은 시민이 복지 혜택을 받으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시흥시민을 위한 복지정보안내서」는 시흥시민에게 굉장히
유용한 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흥시의회도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와 뜻을 함께 하며 ‘소외 없는 복지 도
시’를 구현하고 ‘따뜻하고 안전한 시흥’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흥시민을 위한 복지정보안내서를 펴내며

2021 시흥시민을 위한 복지정보안내서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정보전문위원회

윤미연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이인권 함현상생종합사회복지관
김관형 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김민정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한별희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허은지 썸머힐어린이집
민희선 시흥희망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임다솜 늘푸른사랑채노인주야간보호센터
하주희 엘림양로원
강아람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진신용 시흥시청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팀
고경임 시흥시가족센터

검수자 | 시흥시청 복지국

자원봉사자 | 강민경 시흥시사회복지정보센터 인포레이터

알려드립니다

본 안내서는 PDF본과 인쇄본 두 가지로 제작됩니다.

- PDF본(통합본)은 더욱 다양한 복지정보와 사회복지 시설·기관·단체 주소록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복지정보 50가지를 담은 인쇄본(발췌본)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21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책자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책자(PDF)는 시흥시 웨인포 자료실(<https://siheung.welinfo.kr/?board=shBokjiUtil>)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시흥시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편람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사회복지자료실)에서 시흥시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의 세부 정보를 수록한 편람을 열람 및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www.shcsw.or.kr)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



시흥시사회복지정보센터

그 외 각종 사회복지 관련 정보는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해 보세요.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 : <http://bokjiro.go.kr>
- 시흥시청 (분야별정보: 복지) : www.siheung.go.kr
- 복지넷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www.bokji.net
- 찾기쉬운 생활법률정보 (주제별 생활법률: 복지) : www.easylaw.go.kr



이 안내서에 수록된 복지정책 및 프로그램 내용은 관련기관의 방침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 소개	1
시흥시민을 위한 복지정보안내서를 펴내며	
•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장 리은주	2
• 시흥시장 임병택	3
• 시흥시의회 의장 박춘호	4
•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	5
알려드립니다	6
복지용어해설	11
시흥시 동 행정복지센터	13
코로나19 정부지원제도	
• 생활·생계 지원	14
•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15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생계지원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7
•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19
• 긴급복지 지원제도	21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23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24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취업지원	
• 실업급여	27
• 국민취업지원제도	28
• 국민내일배움카드제	29
• 희망키움통장(Ⅰ, Ⅱ)	30

• 근로장려금	31
•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32

주거 안정이 필요하신가요?

주거지원

• 행복주택 공급	35
•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37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39
•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40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시죠?

임신·보육지원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43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44
• 만 0~2세 보육료 지원	46
• 가정양육수당 지원	47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48
• 아동수당	49
• 아이돌봄서비스	50

돌봄, 교육, 자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돌봄·교육·자립지원

• 아이누리 돌봄센터 사업 (다함께 돌봄 사업)	53
• 유기 및 위기아동 지원(학대피해아동)	55
• 국가장학금[Ⅰ, Ⅱ 유형, 다자녀(세자녀 이상)]	56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57
• 청년내일채움공제	58

CONTENTS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건강지원

- 건강보험 차상위 61
- 의료급여 제도 62
- 재난적의료비 지원 63
-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64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65

어르신들, 생활이며 건강이며 걱정이 많으시죠?

노령층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67
- 기초연금제도 68
- 주택연금제도 69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70
- 치매검진 지원 72
-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73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애인 지원

- 장애인연금 75
- 장애인 일자리 지원 77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78
- 장애인 활동지원 79
-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80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가족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83
-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84
- 다문화가족 지원 85
-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86

특수한 상황이나 어려운 입장에 처했나요?

기타 특수 및 위기상황 지원

- 통합문화이용권 89
- 평생교육바우처 91
- 법률구조 제도 92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

회원기관 소개

95

복지 용어 해설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금액	182만 7,831	308만 8,079	398만 3,950	487만 6,290	575만 7,373	662만 8,603	749만 7,198	836만 5,793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맞춤형 기초생활급여

기준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2021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54만 8,349	92만 6,424	119만 5,185	146만 2,887	172만 7,212	198만 8,581	224만 9,159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73만 1,132	123만 5,232	159만 3,580	195만 516	230만 2,949	265만 1,441	299만 8,879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82만 2,524	138만 9,636	179만 2,778	219만 4,331	259만 818	298만 2,871	337만 3,739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91만 3,916	154만 4,040	199만 1,975	243만 8,145	287만 8,687	331만 4,302	374만 8,599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으나 정확한 사항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43만 8,145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유형	지원내용	소득기준
차상위장애인	장애인수당 4만 원 지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43만 8,145원)
차상위자활	자활사업 연계	
차상위계층확인	전기통신요금 할인 등	
한부모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 양육비 및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중위소득 52% 이하 (2인 기준 160만 5,801원, 4인 기준 253만 5,671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함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함

시흥시 동 행정복지센터

기관명	대표전화	주소
과림동행정복지센터	031-310-4661	시흥시 금오로 383 (과림동)
군자동행정복지센터	031-310-4481	시흥시 도일로 102번길 11 (거모동)
능곡동행정복지센터	031-310-4721	시흥시 능곡로 140 (능곡동)
대야동행정복지센터	031-310-3782	시흥시 소래산길 11 (대야동)
매화동행정복지센터	031-310-4421	시흥시 매화로 22 (매화동)
목감동행정복지센터	031-310-4451	경기 시흥시 목감우희로 23 (조남동)
배곧1동행정복지센터	031-310-6903	시흥시 배곧4로 94-41(정왕동)
배곧2동행정복지센터	031-310-6781	경기 시흥시 서울대학로 278번길 61 (정왕동)
신천동행정복지센터	031-310-4331	시흥시 포도원로 72 (신천동)
신현동행정복지센터	031-310-4361	시흥시 신현로 46 (포동)
연성동행정복지센터	031-310-4691	시흥시 새재로 30 (장현동)
월곶동행정복지센터	031-310-4771	시흥시 월곶중앙로 30번길 7 (월곶동)
은행동행정복지센터	031-310-4391	시흥시 수인로 3247번길 25 (은행동)
장곡동행정복지센터	031-310-4751	시흥시 인선길 14 (장곡동)
정왕1동행정복지센터	031-310-4541	시흥시 정왕대로 298번길 15 (정왕동)
정왕2동행정복지센터	031-310-4571	시흥시 정왕대로 122 (정왕동)
정왕3동행정복지센터	031-310-4602	시흥시 정왕대로 53번길 38 (정왕동)
정왕4동행정복지센터	031-310-4631	시흥시 함송로 29번길 23 (정왕동)
정왕본동행정복지센터	031-310-4521	시흥시 역전로 228 (정왕동)

코로나19 정부지원제도

• 생활·생계 지원

구분	지원대상 및 내용	방법 및 문의
소기업·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대상)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 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내용) 집합금지·제한, 매출감소에 따라 최대 500만 원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신청기간)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안내	온라인 신청 (☎1811-7500)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대상)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내용)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00만 원 차등 지급·(신청기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 안내	온라인 신청 및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신분증, 증빙서류 지참 (☎1899-9595)
방문·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대상) 방문(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7종*), 방과후 학교 종사자 ①재가요양서비스 ②노인맞춤돌봄 ③장애인활동지원 ④장애아동돌봄 ⑤가사간병서비스 ⑥산모신생아서비스 ⑦아이돌보미 등·(내용) 1인당 50만 원 지급·(신청기간)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https://welfare.kcomwel.or.kr) 안내	온라인 신청 (☎1644-0083)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대상)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내용) 1인당 70만 원 지급·(신청기간) 자차단체별 상이·(대상)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한 대학 재학생(학점 C학점 이상)·(내용) 5개월 간 근로 실적에 따라 최대 250만 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	기존신청자: 소속 법인 에 신청 그 외: 자차단체 신청
코로나19 위기기구 특별근로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내근로 시간당 9,000원, 교외근로 시간당 11,150원 (1일 8시간, 학기중 주 최대 20시간, 방학중 주 최대 40시간까지 근로 가능)·(신청기간) 4월 26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	온라인 신청 (☎1599-2290)
저소득근로자 (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대상) 저소득근로자, 저소득 특수형태종사근로자, 저소득 산재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내용) 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 최대 2천만 원 지원·(신청기간) 상시 신청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근로복지공단 방문신청 (☎1588-0075)
가족돌봄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대상) 만 8세 이하, 초2학년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무급휴가 사용한 근로자,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 및 의심 환자 등으로 분류된 사람·(내용) 1일 5만 원(최대 10일) 가족돌봄비용 지원·(신청기간) 4월부터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나의 민원'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 1350)
입원치료·격리자 생활지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대상)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내용) 최소 14일 이상 치료·격리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가구원 수에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따라 생활지원비 차등 지급	

긴급복지 지원 요 금 한시 완화 조치 연 장 (~'21.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복지 지원 요건 한시 완화 조치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사유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2년→3개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자치체장의 위기 사유 인정 재량 확대 등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기준 137만 873원, 4인 기준 365만 7,218원 - 재산 : 대도시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재산기준 : 1인 774만 원, 4인 1,231만 원 이하 등 (내용)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장계비·해산비·전기요금 등 지원 (대상)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기구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기준 137만 873원, 4인 기준 365만 7,218원 - 재산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금융재산은 미반영) - 위기사유 : 소득감소 (지원금액) 가구당 50만 원 정액 1회 지급 	시청,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신청

•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구분	지원대상	신청기한	방법 및 문의
국민연금 3개월 납부 예외	코로나 19에 따른 소득 감소자 (납부예외 직전 기준 소득월액보다 소득이 감소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간) '21.1~6월분 보험료 중 최대 6개 월 · (신청기간) 매월분 익월 15일까지 · (제출서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 입증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가입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방문, 팩스, 우편, EDI) ·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입증서류 또는 확인서 본인 제출(방문, 팩스, 우편)
고용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 장	30인 미만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기한 연장 1~3월분 적용, 4~6월분 추가 실시 · 신청기한 : ~4.12까지, 4~6월분은 7.12까지 · 기 납부한 금액은 환급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 방문·우편·팩스 신청 가능 · 건설·별목업 자진신고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신청 (☎1588-0075)
산재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인 미만 사업장 · 1인 자영업자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기한 연장 1~3월분 적용, 4~6월분 추가 실시 · 신청기한 : ~4.12까지, 4~6월분은 7.12까지 · 기 납부한 금액은 환급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 방문·우편·팩스 신청 가능 · 건설·별목업 자진신고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신청 (☎1588-00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필요서류 -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1부 ① 필요서류 -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1부 	

* 산재보험 감면은 별도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문의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연금보험 : 국민연금공단 ☎1355(유료)

· 산재보험·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생계지원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46만 2,887원에서 60만원을 뺀 86만 2,890원 지급(원 단위 올림)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외래	없음 1,000원	없음 1,500원	없음 2,000원	- 500원
	입원 외래	10% 1,000원	10% 15%	10% 15%	- 500원
2종**	입원 외래	10% 1,000원	10% 15%	10% 15%	10% 15%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증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 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추가지원과 고령자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28만 6,000원	-	-
중학생	37만 6,000원	-	-
고등학생	44만 8,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 료는 분기별 지급

그 밖의 지원

구분	지원내용
해산 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 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3.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 시흥시청 생활보장과 기초생활팀(☎031-310-3436)
-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통신 요금 통신 요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2만 8,6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월 최대 3만 6,850원 감면(부가가치세 포함)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114번호안내 면제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고객센터(휴대전화 ☎ 114), 전용 ARS(휴대전화 ☎ 1523)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1만 2,1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감면(각각 35%) ※ 월 최대 2만 3,65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 교육수급자는 기구원 포함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고객센터(휴대전화 ☎ 114), 전용 ARS(휴대전화 ☎ 1523)						
각종 공공요금 각종 공공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하수도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전기요금 감면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지원내용</th></tr> </thead> <tbody> <tr> <td>생계급여·의료급여</td><td>월 최대 1만 6,000원 (하절기 2만 원)</td></tr> <tr> <td>주거급여·교육급여</td><td>월 최대 1만 원 (하절기 1만 2,000원)</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	월 최대 1만 6,000원 (하절기 2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월 최대 1만 원 (하절기 1만 2,000원)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부 ☎ 1577-8866)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 1577-0900) 한국전력(☎123) 시에서 일괄 면제
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	월 최대 1만 6,000원 (하절기 2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월 최대 1만 원 (하절기 1만 2,000원)								
방송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교통비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문화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동 행정복지센터						



자주 하는 질문

Q. 통신요금감면 신청 시 필요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통신요금감면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별도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통신요금감면은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A. 통신요금감면은 감면이 적용되는 월로부터 감면자격이 변동될 때까지 적용이 됩니다.

감면 자격이 변동되신 경우 통신사에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변경되신 자격으로 재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지원내용
위기 사유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기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7만 873원, 4인 기준 365만 7,218원) 이하
재산	·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주 급 여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식료품비, 의복비 등) 지원	기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26만 6,900원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지역, 기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4만 3,200원 이내	최대 12회
	사회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기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5만 500원 이내	최대 6회
부 가 급 여	교육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초등학생 22만 1,600원 중학생 35만 2,700원 고등학생 43만 2,2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최대 2회 (4회*)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9만 8,000원	최대 6회
	해산비 출산 지원	70만 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1회
	장례비 장례비 지원	80만 원	1회
민간기관·단체 등 연계	전기요금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사회복지협의회(좋은이웃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당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3. 방법

시청,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신청

4. 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 시흥시청 복지정책과 무한돌봄팀(☎031-310-3566)

자주 하는 질문



Q.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A.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청이나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경우 통신사에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변경되신 자격으로 재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1. 대상

소득이 있고 연체가 없는 직장인 및 자영업자

2. 내용

- 정책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햇살론17, 사잇돌) 및 민간 금융회사의 일반 대출상품(중금리, 대환상품)의 한도와 금리를 비교해 가장 적합한 대출상품 중가
-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의 180여 개 대출상품의 한도 및 금리 비교 후 가장 적합한 대출 선택

3. 방법

맞춤대출 앱, 서민금융콜센터 및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loan.kinfa.or.kr)에서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loan.kinfa.or.kr)
- 맞춤대출 앱(앱스토어에서 '맞춤대출'검색)

알려드립니다

맞춤대출서비스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①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편리하게 대출 상담이 가능합니다.
- ② 본인의 소득과 신용에 알맞은 최적의 대출상품을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맞춤대출서비스 이용 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 금융회사별 0.5~3.0%p 우대금리 적용(상품별 상이)
- ④ 대출상품의 단순 안내가 아닌 금융회사의 실제 대출 심사시스템을 통해 대출 가능여부·한도·금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⑤ 가장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선택하여 이자 부담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1. 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2. 내용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이자율 조정, 이자 감면, 원금 감면(요건 충족 시 20~70%, 취약채무자는 최대 90%) 등을 지원

※ 지원제도 :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 방법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 설치 후 상담 신청

4.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취업지원



• 실업급여

1. 대상

-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2. 내용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예술인은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의 구직급여 지급

※ 단, 1일 상한액 6만 6,000원, 하한액 6만 120원(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3. 방법

-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활동(수급자)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4. 문의



시흥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496-1900, www.work.go.kr/siheung)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를 해야 합니다.

부정한 실업급여 수급은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 허위신고, 취업사실 미신고 등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입니다. 부정행위로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부정수급액의 20%)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5,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 대상

필수요건		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재산	취업경험
I 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50%↓	3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청년 선발형 비경활	18~34세 15~69세	중위소득 120%↓ 중위소득 50%↓	3억원 이하 3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II 유형	저소득	15~69세	중위소득 60%↓	X	X
	특정계층		X		
	청년		X		
	중장년		중위소득 100%↓		

2.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수당 지원
I 유형	· 심층상담: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 (IAP) 설정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 취업지원: 심층상담을 토대로 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지 (월 50만 원 x 6개월) 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및 복지 연계서비스 등	
II 유형	· (1단계)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15~195.4만 원*(6개월)
	· (2단계) 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 1단계 참여수당 15~25만 원, 연계 지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 원	
	· (3단계)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 원 지원(월 28.4만 원 x 6개월)	

3.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work.go.kr/siheung)으로 참여 신청

4. 문의



- 시흥고용복지플러스센터(☎031-496-1900)
- 시흥시청 생활보장과 자활지원팀(☎031-496-1983)

• 국민내일배움카드제

1. 대상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피보험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근로자
- 영세자영업자(사업기간 1년 이상, 연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월평균 소득액이 300만원 미만)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비진학 예정자
- 대학졸업예정자, 군 전역예정자인 중 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등

2. 내용

실업자·재직자 등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 간 300~500만 원의 직업능력훈련비 등 지원

구분	훈련비 지원율	
일반실업자 등	훈련비의 45~85%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II 유형 중 청·중장년층 I 유형 및 II 유형 저소득층(특경 계층)	훈련비의 50~85% 지원 훈련비의 전액 또는 80% 지원
근로장려금 수급자	훈련비의 72.5~92.5% 지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훈련비 전액 지원 ※ 200~300만 원 사용으로 간주	

※ 실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월 출석률이 80%이상이면 월 최대 11만 6,000원(21년 한시 월 최대 30만 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학생 등 특별훈련수당 제외(월 최대 11만 6,000원 지급)

3. 방법

- 카드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진단·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4. 문의



- 직업훈련포털HRD-Net(www.hrd.go.kr)
- 시흥고용복지플러스센터(☎031-496-1900)

알려드립니다

아래 경우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 연 매출 1억 5,000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
- 월 평균 소득액이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희망키움통장(Ⅰ, Ⅱ)

1. 대상

구분	가입기준
I 유형 (기초수급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가구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재정지원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II 유형 (차상위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2. 내용

구분	훈련비 지원율
I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 지급3년 이내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II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지원금(10만 원, 본인 저축액 1:1 매칭) 지급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고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을 완료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지원예시

- I 유형 : (10만 원 저축 시) 3년 간 평균 1,728만 원, 최대 2,819만 원
- II 유형 : (10만 원 저축 시) 3년 간 평균 720만 원

3.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 근로장려금

1.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20.12.31. 현재 가구원(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 : 2020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인 가구
- 소득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2020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가구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2020년 기준)	2,000만 원	3,000만 원	3,600만 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2. 내용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을 위해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미만 가구에 소득수준에 따라 연 최대 300만 원 지급

3. 방법

- ① (원칙) 5월 신청 → 9월 지급
- ② (근로소득자)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 선택 가능
 - (상반기 소득분) 9.1~9.15 신청, 12월말 지급
 - (하반기 소득분) 다음해 3.1~3.15 신청, 6월말 지급
- ③ (신청방법)
 - 전자신청(ARS 전화 ☎1544-9944, 손택스, 인터넷홈택스)
 - 신청도움 서비스(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4. 문의



· 국세상담센터(☎126)
· 시흥세무서(☎031-310-7200)

자주 하는 질문

Q. 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에 지급되나요?

A.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활동 및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무소득 가구나 기타소득만 있는 가구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1. 대상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희망자

2. 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유형	지원내용
취업 상담	구직자의 취업적성을 고려한 취업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유망직종, 자격시험정보 등 취업정보 제공
직업교육 훈련	전문기술, 기업맞춤형훈련, 취약계층과정 등 취·창업이 용이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취업 연계 및 인턴십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구인처 발굴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취업연계·동행면접 지원기업체 직무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 제공 및 지원금(1인당 380만 원 한도 기업 320만원, 인턴60만원) 지원
사후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취업자 대상 직장적응교육 및 상담, 멘토링 등 지원채용기업 대상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환경개선(수유실, 여성화장실 등) 등 지원
경력단절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경력단절예방 상담과 컨설팅, 직장적응 및 복귀 프로그램, 직장문화개선교육 등 지원

3.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 후 신청

4. 문의



-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031-310-6024)
- 시흥여성새로일하기센터(☎031-313-8219, www.saeil.mogef.go.kr)

자주 하는 질문

Q. 인턴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나요?

A. (인턴지원금) 인턴연계기업에 3개월동안 매월 80만원씩 지급
(새일고용장려금) 인턴종료 후 상용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에 80만원 지급

(근속장려금) 인턴종료 후 상용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인턴에 60만원 지급





주거 안정이 필요하신가요?

주거지원



• 행복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등)과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계층	입주 자격(모집공고일 기준)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 본인 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7,2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은 본인 기준)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자산) 세대 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5,4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소득)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고령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	(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 기준 219만 4,331원)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
창업인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역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지역전략 산업 종사 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 중소기업 근로자 전**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
- 용주택에 입주하려는 자**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장기근속자)

- ※ 소득요건 적용 시 1인가구는 20%, 2인가구는 10%를 기준 비율에서 각각 추가로 더하여 적용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 규칙 개정(21.2.2.시행)
- ※ 2020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 100%(3인 기준) 624만 520원, 120%(3인 기준) 748만 8,624원
- ※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장기근속자(부부일 경우 둘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 공급비율 : 젊은층 80%, 취약 노인계층 20%
- 산업단지형은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 일자리연계형(창업·지역전략산업지원, 중기지원)은 해당 유형별 입주 대상자(창업인 등) 10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2.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3.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홈페이지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 홈페이지(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홈페이지(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4. 문의



- 동행정복지센터
-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0)
-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
-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자주 하는 질문

Q.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홈페이지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 1600-1004, SH ☎ 1600-3456)



Q.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A.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단, 세대원을 거느리는 세대주인 청년의 경우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 충족 필요)

Q.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A.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 총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2억 1,5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매입임대 I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맞벌이 100%) 이하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 II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다자녀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직 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고령자형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2억 1,500만 원,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 2021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

50% 312만 260원, 70% 436만 8,364원, 90% 561만 6,468원, 100% 624만 520원, 120% 748만 8,624원

2. 내용

매입임대사업주택 :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
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구분	지원내용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청년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I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II	시세 80% 이하, 최장 6년간 임대(유자녀 시 최장 10년)
다자녀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고령자형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3.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 동 행정복지센터,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 LH를 통해 신청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4. 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4)
- LH마이홈 (☎1600-1004)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1. 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가정 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2.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매입임대, 전세임대는 최장 20년, 국민임대는 최장 30년 거주 가능)

3.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4. 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0)
- LH마이홈 (☎1600-1004)

•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9,4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

2. 내용

- 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 단독세대주 60㎡) 이하로 5억 이하 주택(단독세대주 3억)의 구입자금을 최대 2억 원(신혼부부 2억 2,000만 원, 2자녀 가구 2억 6,000만 원, 단독세대주 1억 5,000만 원)까지 소득별로 연 1.85~2.40%(주택 최초 구입 신혼부부 1.55%~2.10%) 저금리로 대출
-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3.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은행)에 방문 신청
-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4.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은행)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시죠?

임신·보육지원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1. 대상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휴가	- 우선지원 대상기업 최대 90일(쌍둥이는 120일) - 대규모 기업: 최대 30일(쌍둥이는 45일)
출산전후휴가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 미달 시 최저임금액) 지원
급여	- 우선지원 대상기업: 최대 600만 원(쌍둥이는 800만 원), - 대규모 기업: 최대 200만 원(쌍둥이는 300만 원)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까지 휴가 및 급여 지원	

3. 방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4. 문의



- 시흥고용복지플러스센터(☎031-496-1900)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자주 하는 질문



- Q. 비정규직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정규직뿐 아니라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됩니다.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1.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 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의사의 확인 필요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

알려드립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2. 내용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임신 1회당 60만 원 지급(다태아 임신부 100만 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 사용 기간: 카드 수령(지원금 생성일) ~ 출산일(분만예정일, 유산진단일) 이후 1년까지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 바우처 사용중 재임신 또는 유산 시 기존 등록 건에 대해 해지하고 신규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 바우처 잔여지원금은 소멸

3.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은행) 방문 신청
-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직접 카드사(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어플, 전화로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1577-1000, www.nhis.or.kr)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자주 하는 질문

Q. 분만취약지역은 어디인가요?

A.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으로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 고시에 따라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서 규정하는 지역



'21년 분만취약지

인천(옹진군), 경기(양평군), 강원(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보은군, 괴산군), 충남(청양군), 전북(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보성군, 강홍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 21년 4월 현재 30곳

- 만 0~2세 보육료 지원

1.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소득무관)

2. 내용

나이에 따라 월 약54만원~ 100만원의 보육료 지원

3. 방법

- 전국(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 시흥시청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 (☎031-310-6886)

자주 하는 질문



Q. 보육료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 A.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등 보육서비스는 수급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서비스 신청 이후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연장보육 이용안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동일한 기본보육료가 지원되고, 오후 4시 이후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연장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신청하여야 하나, 미신청 아동의 경우에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이용신청 후 연장보육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가정양육수당 지원

1. 대상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6세 영유아

2. 내용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의 가정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양육수당		장애인 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0~11개월	20만 원	0~35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24~35개월	10만 원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 원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 원

3. 방법

- 전국(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 시흥시청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031-310-6886)

알려드립니다

양육수당에서 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으로 서비스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해당월 양육수당 미지원.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익월 1일자로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보육료, 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서비스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해당월 보육료, 유아학비 미지원. 양육수당 지원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익월 1일자로 양육수당 지원

자주 하는 질문



Q. 출생아의 양육수당 신청기한이 궁금합니다

- A.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며, 그 외의 출생아 소급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소급지원하지 않습니다.
(세부기준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1. 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

· 만 5세 : 2015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 만 4세 : 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 만 3세 : 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 취학대상 아동(2014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 만 무상교육비 지원(단,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2. 내용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지원

3. 방법

구 분	지원액(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가정 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8만원	26만원	26만원	26만원
보육료(어린이집)				
방과후 과정비	5만원	7만원	7만원	7만원

※ 상기 단가는 유아가 교육일수 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아 1인당 월 최대 지원 금액임
(21년 기준)

4. 문의

- 전국(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시흥시청 이동보육과 보육지원팀(☎031-310-6886)

알려드립니다

· 지원기간 : 만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제외 :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출국일 이후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시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지원



• 아동수당

1. 대상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

2. 내용

만 7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84개월 간 월 10만 원 지급

※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3. 방법

- 아동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가능

4. 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 시흥시청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031-310-2637)

자주 하는 질문



- Q. 아동수당 지급시기가 궁금합니다
A.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 Q.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나요?
A. 아동의 국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 되는 경우, 행방불명이나 거주불명이 등록된 경우 지급이 정지 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1. 대상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2.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연 840시간 이내, 서비스 종류별 상이)

서비스 종류		대상		이용 시간		돌봄 서비스 범위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36개월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유식 먹이기, 결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시설이용 아동**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만12세 이하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학교, 보육시설 및 등·하원(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종합형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돌봄서비스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 추가 지원(아동 관련 세탁, 놀이공간 정리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및 감기·눈병 등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

** 시설이용 아동 : 사회복지 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0,040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시간당 12,050원)			
				A형 (2014.1.1. 이후 출생)		B형 (2013.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8,534원 (85%)	1,506원 (15%)	10,243원 (85%)	1,807원 (15%)	9,038원 (75%)	3,012원 (25%)
나형	120% 이하	6,024원 (60%)	4,016원 (40%)	7,230원 (60%)	4,820원 (40%)	6,025원 (50%)	6,025원 (50%)
다형	150% 이하	1,506원 (15%)	8,534원 (85%)	6,025원 (50%)	6,025원 (50%)	6,025원 (50%)	6,025원 (50%)
라형	150% 초과	-	10,040원 (100%)	6,025원 (50%)	6,025원 (50%)	6,025원 (50%)	6,025원 (50%)

유형	소득기준 (기준 증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0,040원)				종합형(시간당 13,050원)			
		A형 (2014.1.1. 이후 출생)		B형 (2013.12.31. 이전 출생)		A형 (2014.1.1. 이후 출생)		B형 (2013.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8,534원 (85%)	1,506원 (15%)	7,530원 (75%)	2,510원 (25%)	8,534원	4,516원	7,530원	5,520원
나형	120% 이하	6,024원 (60%)	4,016원 (40%)	2,008원 (20%)	8,032원 (80%)	6,024원	7,026원	2,008원	11,042원
다형	150% 이하	1,506원 (15%)	8,534원 (85%)	1,506원 (15%)	8,534원 (85%)	1,506원	11,544원	1,506원	11,544원
라형	150% 초과	-	10,040원	-	10,040원	-	13,050원	-	13,050원

3.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문의



- 아이돌봄 홈페이지(☎1577-2514, www.idolbom.go.kr)
- 시흥시청 여성가족과 건강가정팀(☎031-310-2617)

알려드립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아시나요?

- 법정 전염성 질병이나 감기·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 학교)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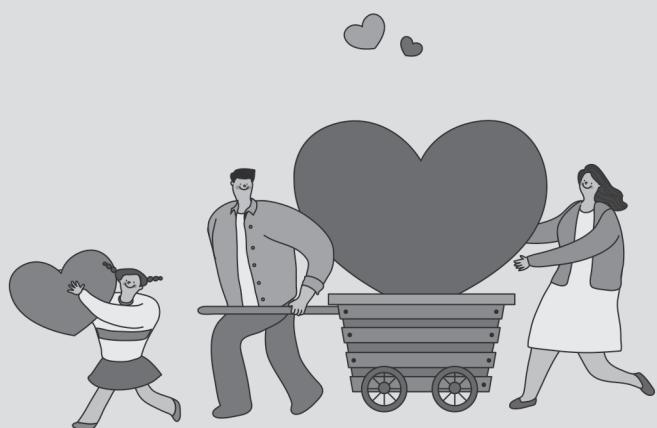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시간제 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 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돌봄, 교육, 자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돌봄·교육·자립지원



• 아이누리 돌봄센터 사업 (다함께 돌봄 사업)

1. 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소득수준 무관)

2. 내용

등교 전, 방과후, 야간돌봄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 및 양육, 교육 등
의 서비스를 제공

- 이용시간 : (학기중) 13:00~19:00 (방학중) 09:00~19:00
- 이용료 : (프로그램 운영비, 간식비 등) 10만 원 이내 본인부담

구분	시간	프로그램
방학중	09:00-10:00	출석확인, 자유놀이
	10:00-11:00	독서지도, 숙제·학습지풀기
	11:00-12:00	프로그램 또는 동영상(EBS)
	12:00-13:00	점심시간 및 휴식
학기중	13:00-14:00	자유놀이(야외 및 실내놀이)
	14:00-14:50	독서지도, 숙제·학습지풀기
	14:50-15:30	간식시간 및 휴식
	15:30-16:00	프로그램
	16:00-17:00	프로그램
	17:00-18:30	자유놀이, 귀가지도
	18:30-19:30	저녁식사
	일시 돌봄	저녁돌봄(돌봄서비스연계등)

3. 방법

- 시 아이누리 돌봄센터(다함께돌봄센터) 신청
- 돌봄서비스 신청(보호자) → 상담, 개인별 플랜(센터) → 돌봄서비스 이용결정 통보(센터) → 서비스 제공(센터) → 사후관리 및 확인(해당 지자체)

4. 문의



- 시흥시청 아동보육과 온종일돌봄팀(☎031-310-3424)
-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 홈페이지(<https://dadol.or.kr>)
- 시흥시 아이누리 돌봄나눔터

시흥시 아이누리 돌봄나눔터

번호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대상 학년	운영 시간	정원
1	하늘꿈작은 도서관	시흥시 신현로 12번길 8, 2층	031-315-0179	초등학교 전학년	(학기중) 13:00~19:00	15
2	연성아지트	시흥시 하중로 133번길 8 관리동 3 층	031-310-5880			20
3	행복한숲속 마을학교	시흥시 장곡로53번길 10	031-504-7721		(방학중) 09:00~19:00	10
4	달빛포구 마을학교	시흥시 월곶해안로111-1호	031-317-2016			15
5	희망센터 마을학교	시흥시 매화2로48번길8	031-318-5253		(긴급돌봄) 09:00~19:00	15
6	대야종합 사회복지관	시흥시 호현로 55	031-404-8114			15

• 유기 및 위기아동 지원(학대피해아동)

1. 대상

아동학대조사 시 발견된 유기 및 위기아동(학대피해아동)

2. 내용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아이돌보미 파견 본인부담금 지원, 유기된 영아 발견시 병원 응급치료비 지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교육서비스 제공
 - 재학대 발생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 재발 위험으로 원가정으로 돌아가기 힘든 아동 보호
 -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상담,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 지원
 - 일상생활지원, 학업지도 및 문화 체험 지원

3. 방법 및 문의



- 아동학대 신고전화(☎112) 또는 모바일 앱 “아이지컴콜112”
-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031-316-1391)
- 시흥시청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031-310-0790)
-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ncrc.or.kr) 참조

자주 하는 질문

Q.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A.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업무상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직무상 아동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 * 교사 직군(초·중등교육법의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
 -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 * 학원 및 교습소의 장과 그 종사자 등

Q.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은?

- 신체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행위
- 정서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등
- 성학대 :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하는 성추행, 성행위, 성노출 등
- 방임 : 의식주 소홀, 학교나 병원에 보내지 않음, 비위생적인 환경 등

Q. 신고 시 어떤 사항을 말하면 좋을까요?

- A. 학대피해 의심아동과 학대행위 의심자에 관한 대략적인 정보를 말씀해주시고, 학대 의심 상황과 관련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들을 모두 알려주시면 됩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보호되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I , II 유형, 다자녀(세자녀 이상)]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유형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국가장학금 II유형	II유형에 참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학교 자체 기준으로 선발)
다자녀장학금 (세자녀 이상)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셋 이상) 가구의 모든 대학생(미혼에 한함)

※ I 유형 및 다자녀장학금은 성적(B0) 및 이수학점(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총족 필요

※ 단, 기초·차상위계층은 C0 이상 적용, 학자금지원 1~3구간은 C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장애인 학생은 성적기준 없음

2. 내용

- I 유형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차등지원

지원구간	(단위 : 만 원)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지급액	520	520	520	520	390	368	368	120	67.5
- II 유형 : 대학별 자체기준에 따라 지원
- 다자녀(세자녀 이상)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 원 지원(단, 기초~3구간은 연간 520만 원 지원)

3.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www.kosaf.go.kr)

알려드립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자금지원 범위를 다르게 정하기 위해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에 대한 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기준으로 산정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개인별 지원구간(1~10구간)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 대상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협약을 체결한 국내 대학(대학원 제외)에 재학 및 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과 장애인인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이며, 만 35세 이하인 학부생

※ 다자녀(세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관계없이 이용 가능

※ 장년층의 재교육 및 계속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전문대 계약학과('채용

2. 내용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협약을 체결한 국내 대학(대학원 제외)에 재학 및 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과 장애인인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이며, 만 35세 이하인 학부생

※ 다자녀(세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관계없이 이용 가능

※ 장년층의 재교육 및 계속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전문대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 학부생은 만 45세까지 대출 가능

※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에 한해 만 45세까지 대출 가능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만 이용 가능

3. 방법

등록금 대출은 등록금 전액, 생활비 대출은 연간 300만 원 한도(학기당 150만 원)내에서 연 1.7%(변동금리)로 대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는 생활비 대출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지원

4. 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1599-2000, www.kosaf.go.kr)

알려드립니다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 학자금대출금리 인하로 이자부담이 경감됩니다.

(2020년 2학기 1.85% ⇒ 2021년 1.7%)

• 청년내일채움공제

1. 대상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만 15~34세의 청년

※ 5인 이상 기업 가입 가능(벤처기업 등 일부 예외),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기업만
가입 가능

※ 자세한 가입 요건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또는 고객상담센터 문의 요망

2. 내용

청년(근로자)이 기업에서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부담금 300만 원(매월 12만 5,000원)을 적립하고, 기업에서 300만 원(정부지원), 정부에서 취업지원금 600만 원을 각각 적립해* 1,200만원(+이자)의 목돈 지원

* 정규직 취업 후 1·6·12·18·24개월, 총 5회 적립

3.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www.work.go.kr/youngtomorrow) ⇨ 자격확인 ⇨ 청년공제 청약 신청 및 가입* (www.sbcplan.or.kr) ⇨ 공제금 적립 ⇨ 만기금 지급(1,200만 원+이자)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 신청

4. 문의



- 시흥고용복지플러스센터(☎031-496-1900)
- 시흥상공회의소(☎070-4485-9958, 9965)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건강지원



• 건강보험 차상위

1. 대상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 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43만 8,154원) 이하이고 부양요건¹을 충족하는 사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본인부담률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입원·외래) 면제, 식대의 20%만 부담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만 부담

3. 방법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지급

4. 문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시흥시청 마을자치과 복지행정팀(☎031-310-4308)

• 의료급여 제도

1. 대상

의료급여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해 지원

구분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1종 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소득재산기준이 있음
2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 : (1종)입원 면제, 외래 1,000~2,000원, (2종)입원 10%, 외래 1,000원 ~15%, 약국 500원(일부 예외 있음)
요양비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비, 양압기 임대비용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본 책자 167p)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 폴밀도 검사 : 만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만 66세 이상 2년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만 70세를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 생활습관평가 : 만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 70, 80세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60만 원을 가상계좌로 지급 (다태아인 경우 100만 원)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급 ※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3. 방법

-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보건기관) 우선 이용 후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이용 가능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1577-0606)에 신청
 -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청(☎1600-0064)에 신청

4. 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 시흥시청 생활보장과 기초생활팀(☎031-310-3439)

• 재난적의료비 지원

1.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증위소득 100%(4인 기준 직장가입자 17만 4,500원, 지역가입자 18만 400원) 이하 가구 중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 소득 대비 15% 이상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발생액이 80만 원, 증위소득 50% 이하 자는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2. 내용

질환별 입원진료비 및 외래진료비(6대 중증질환* 중심)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일정수준 이상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 담금의 50%로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 6대 중증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3. 방법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1577-1000)
- 시흥시청 생활보장과 기초생활팀(☎031-310-2625)

•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1. 대상

지역주민

2. 내용

- 지역사회 주민 대상 우울증, 자살 등 정신건강 상담 및 예방 교육
- 만 18세 이하 또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상담, 교육, 의료비 지원 등)
- 정신질환자 대상 투약·치료관리, 심층사정평가, 상담 및 사회복귀 지원

3. 방법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



-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
-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316-6661)

자주 하는 질문



Q.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는 어떤 일을 하나요?

A. 담당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자살위기 상담 등 정신건강 상담, 정신건강 정보 제공, 정신 의료기관 안내 등을 합니다.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는 시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미설치된 곳은 보건소의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연결됩니다. 야간 및 주말, 휴일은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착신 전환하여 연결되기 때문에 365일, 24 시간 전국 어디에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1. 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을 받은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2. 내용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항목 및 금액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자)	응급입원비 -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동안 입원하는 경우 행정입원비 지자체장이 진단 및 치료를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입원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본인부담금 포함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까지 치료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발병초기 정신질환 외래치료비 최초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치료를 받는 경우 * 해당진단 :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 외래치료지원 대상자의 외래치료비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간 최대 45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 시흥시보건소(☎031-310-5815)
- 정왕보건지소(☎031-310-5901)
-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316-6661)

어르신들, 생활이며 건강이며 걱정이 많으시죠?

노령층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재가입여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 등 제공…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
특별현금급여	섬·벽지 지역 거주자,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법에 규정된 사유로 장기요양 (가족요양비) 기관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요양비 월 15만 원 지급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1577-1000, www.longtermcare.or.kr)

알려드립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65세가 도래하기 30일 전부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제도

1. 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2. 내용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3. 방법

구분	선정기준액	월 최대 지원 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70%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만 4,000원	월 최대 30만 원	월 최대 48만 원 (1인당 최대 24만 원)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

4. 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031-488-2741)
-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ohw.go.kr)

알려드립니다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제도

1. 대상

보유 주택이 공시 가격 등 9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 9억 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2. 내용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

지원예시

집값이 3억 원인 55세 가입자는 매월 48만 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92만 1,000원의 연금수령(종신지급, 정액형 이용, 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 2021년 2월 기준)

※ 일정한도 내에서 목돈으로 한 번에 인출해 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 대출 상환용도로 사용 가능

3.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중부지사(☎031-478-7000, www.hf.go.kr)

자주 하는 질문

Q.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A. 배우자가 채무인수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연금금액은 감액 없이 기준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Q.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이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나요?

A. 이사 후에도 새로운 주택을 담보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적거나 집값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산절차를 통해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사회활동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재능나눔활동	만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
	시장형사업단	만 60세 이상
	취업알선형	만 60세 이상
	시니어인턴십	
	기업연계형	
	고령친화기업	

* 일부 유형 한정하여 만 60세 이상 참여 허용

2. 내용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구분		지원내용
사회 활동	공익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공익 증진 프로그램 참여 (월30시간 이상, 27만 원 활동수당)-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재능나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의 재능(자격·경력) 활용한 상담안내, 학습지도 참여 (월10시간 이하, 10만 원 활동수당)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 (월60시간, 월 급여 최대 59만 4,000원(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별도))- 지역아동센터·장애인거주시설 식사보조, 환경정리 등
	시장형사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매장·사업단에서 활동- 식품 제조·판매, 매장 운영, 택배 등
	취업알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경비·청소·가사·간병인 등
	시니어인턴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기업 취업지원- 기업인턴(3개월) 후 계속고용 유도(기업대상 인건비 지원)
	고령친화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다수고용기업 설립 또는 우수 노인고용기업 지원- 기업인증형·모기업연계형·시장형사업단 발전형·브릿지형 등

3. 방법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에 신청

4. 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 시흥시니어클럽(☎031-319-5579)
- 시흥실버인력뱅크(☎031-433-1375)
-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031-311-3606)
-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031-404-3100)
- 시흥시북부노인종합복지관(☎031-8063-2600)
- 시흥시청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031-310-2262)

자주 하는 질문



Q.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로 받는 활동비도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소득으로 보나요?

A.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활동비는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근로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 치매검진 지원

1. 대상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진단·감별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월 585만 1,548원) 이하인 어르신

2. 내용

-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무료 실시
-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 필요 시 전국 600여 개소 협약병원에서 추가 진단·감별검사 실시 및 검사비 일부 지원

검사종류	검사내용	지원내용
선별 검사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선별검사 (CIST)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진단 검사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15만 원 한도 내) 지원
감별 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병·의원, 종합병원 급 8만 원, 상급종합병원 11만 원 한도 내) 지원

3.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4. 문의



- | · 시흥시치매안심센터(☎031-310-5857, 0081, 5903)
· 시흥시청 보건정책과 치매정책팀(☎031-310-6068)

•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교통비	65세 이상 어르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 무료 이용 - KTX·새마을호·무궁화호 30% 감면(KTX·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 통근열차 50% 감면 	이용 시 신분증 제시 (코레일 ☎ 1544-77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국내선·국제선 10% 감면(단, 성수기, 일부노선은 제외) 	이용 시 신분증 제시 (대한항공 ☎ 1588-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여객운임 20% 감면 	이용 시 신분증 제시 (한국해운조합 ☎ 02-6096-2000)																
문화 활동비	65세 이상 어르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 입장 · 국·공립국악원 입장료 50% 이상 할인 ·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입장료 50% 할인 	입장 시 신분증 제시																
국민 건강보험료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 는 지역가입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재산요건 만족 시 최대 30% 할인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등급</th> <th>2등급</th> <th>3등급</th> </tr> </thead> <tbody> <tr> <td>소득</td> <td colspan="3">360만 원 이하</td> </tr> <tr> <td>재산</td> <td>6,000 만 원 이하</td> <td>9,000 만 원 이하</td> <td>1억 3,500 만 원 이하</td> </tr> <tr> <td>경감률</td> <td>30%</td> <td>20%</td> <td>10%</td> </tr> </tbody> </table>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소득	360만 원 이하			재산	6,000 만 원 이하	9,000 만 원 이하	1억 3,500 만 원 이하	경감률	30%	20%	10%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소득	360만 원 이하																		
재산	6,000 만 원 이하	9,000 만 원 이하	1억 3,500 만 원 이하																
경감률	30%	20%	10%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이며,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인 경우 30% 경감 																		
이동통신 통신요금	기초연금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청구된 이용금액의 50% 감면 · 월 최대 1만 2,100원 감면(부가가치세 포함) ※ KT, SKT, LGU+ 가입자 대상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고객센터(휴대전화 ☎ 114), 전용 ARS(휴대전화 ☎ 1523)																
각종 공공요금	노인 복지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가스요금 감면 	시설에서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 1577-0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요금 감면 	시설에서 신청 (한국전력공사 ☎ 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환경부 ☎ 1577-8866)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애인 지원



• 장애인연금

1. 대상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2. 내용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2021년 기준, 월지급액)

구분	만 18세 ~ 64세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38만 원 · 기초급여 30만 원 · 부가급여 8만 원	38만 원 · 부가급여 38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최고 37만 원 · 기초급여 30만 원 · 부가급여 7만 원	7만 원 · 부가급여 7만 원
차상위 초과	최고 32만 원 · 기초급여 30만 원 · 부가급여 2만 원	4만 원 · 부가급여 4만 원

* 차상위계층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43만 8,145원) 이하

** 만 65세 이상 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신청 필요)

3.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매월)

4. 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 시흥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1-310-6867)

자주 하는 질문

Q.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A.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

Q.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 재심사 면제대상*을 제외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는 분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재심사 면제대상

· 중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특례대상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

· 2017.4.1. 이후 국민연금공단(장애인심사센터)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경우

Q. 장애정도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주세요?

A.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최대 10만 원 범위 내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일자리 지원

1. 대상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2. 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근로시간	급여(매월)
일반 형 일자 리	전일제	미취업 등록 장애인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182만 2,480원 12월 : 170만 4,760원
	시간제		일 4시간 주 5일	91만 1,240원 12월 : 86만 3,280원
복지 일자리			주 14시간 월 56시간	48만 8,320원
안마사 파견	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안마서비스	일 5시간 주 25시간	115만 6,010원 12월 : 108만 1,380원
요양보호사 보조	발달 (지적, 자폐)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조	일 5시간 주 25시간	114만 2,320원 12월 : 106만 8,510원

3. 방법

시청 장애인 일자리사업 담당과에 신청

※ 시청 단위로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 참여자 모집

4. 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 시흥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1-310-6869)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I 유형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69세 장애인
II 유형	취업을 희망하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18~69세 장애인

※ 단, 69세를 초과할 경우 상담과 평가를 통해 참여여부를 판단

2. 내용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1단계)	상담 및 취업계획 수립	
	· 장애인 전문상담(최소 2회 이상 실시)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참
1개월	· 장애인 심리검사-직업평가	여수당 기본 15만 원
이내	· 장애인 집단상담 프로그램	·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 시 5만 원 또는 10만 원 추가 지급

(2단계)	직업능력 향상	
12개월	· 직업훈련	훈련수당
이내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연계 등	월 최대 28만 4,000원

(3단계)	집중 취업알선	
	· 사전직무분석 및 적합일자리 동행 면접	
3개월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원(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취업 후 성공수당
~ 6개월	· 일자리관련 정보 제공 · 취업 후 적응지도 실시	최대 150만 원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업능력개발원으로 신청

4. 문의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031-300-0931, www.lead.or.kr)
· 시흥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1-310-6869)

자주 하는 질문

Q. 장애인 민간위탁훈련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인 민간위탁훈련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수료한 후에 2단계 민간훈련기관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역 공단지사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는 무엇인가요?

A. 장애인의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업지원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한 진로설계, 취업계획 수립(1단계),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직업훈련(2단계), 취업알선(3단계)의 각 단계마다 참여(훈련)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1. 대상

만 6세~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종합점수 산정 결과 42점 이상인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구분

2. 내용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 활동지원급여(1~15등급) : 최소 84만 2,000원 ~ 최대 673만 원

· 특별지원급여(3종) : 한시적 지원

- 출산(112만 2,000원), 자립준비(28만 1,000원), 보호자 일시 부재(28만 1,000원)

※ 특별지원급여의 경우 최대 6개월이며 사유별로 다름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3.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 후 신청

4. 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031-488-2749)

자주 하는 질문



Q.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기준이 있나요?

A.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이용을 위해서는 소득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감면 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방송 요금	시청각 장애인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수신료 전액 면제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 원 한도 50% 감면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또는
통신 요금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가구 당 1회선)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또는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교통비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 공영버스 무료 이용 · 국내선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50% 할인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코레일☎1544-7788)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02-6096-2000)
자기용 자동차 관련	등록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감면 - 하이패스 차로 :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교통안전공단☎1577-0990)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각 차지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시 교통담당과)

각종 공공 요금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 지자체별로 지원 ·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6,000원 감면 (하절기 2만 원)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부 ☎1577-8866) 한국전력(☎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 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 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입장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서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사이버경찰청(☎182)
문화 활동비	장애인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 공항터미널 주차료 감면 	관할 시 차량등록부서 코레일(☎1544-7788)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가족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2인 기준 160만 5,801원) 이하이면서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2인 기준 185만 2,847원) 이하

2. 내용

아동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21.5월~)
추가 아동양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급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지급(21.5월~)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급(21.5월~)
학용품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연 8만 3,000원 지급
생활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 원 지급

3.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 가족상담전화(☎1644-6621⇒2번)
- 시흥시청 여성가족과 건강가정팀(☎031-310-2618)
- 온라인상담(www.mogef.go.kr ⇒ 한부모 ⇒ 온라인한부모가족상담 코너)

알려드립니다



복지서비스 대상인 한부모가족이란?

-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2인 기준 185만 2,847원) 이하인 아동을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2인 기준 222만 3,417원) 이하

2. 내용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한부모의 교육비 지급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지급·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청소년한부모의 아동 1인당 월 25만 원 지급(21.5월~)
검정고시 학습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정고시 학원, 검정고시 시험과목을 강의하는 학원(온·오프라인), 대안학교, 온라인 학원(원격평생교육시설) 수강 시 가구별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학원등록비, 교재구입비, 학용품비(8만 3,000원) 지원
고교생 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60% 구간 청소년 한부모의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 전액 지급(재학 중인 학교로 입금)
자립지원 촉진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업·직업훈련, 직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 시 월 10만 원 지급

3. 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 가족상담전화(☎1644-6621⇒2번)
- 시흥시청 여성가족과 건강가정팀(☎031-310-2618)
- 온라인상담(www.mogef.go.kr ⇒ 한부모 ⇒ 온라인한부모가족상담 코너)

자주 하는 질문



Q. 청소년한부모가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현재 2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추가로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52%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아동 1인당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 지원대상 청소년 한부모도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아동양육비 10만원에 추가로 15만원을 추가하여 총 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 지원

1. 대상

다문화가족 등

2. 내용

한국어교육, 가족상담, 취업교육 및 연계 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지원

3. 방법

시흥시가족센터에 신청

4. 문의



· 시흥시가족센터(☎031-319-7997)
· 시흥시청 여성가족과 다문화지원팀(☎031-310-2611)

-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1. 대상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특례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까지 특례* 적용 * 근로무능력가구일 경우 가구원수에 1명을 추가한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능력가구일 경우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은 자활사업참여 의무 조건 제시를 유예
국민연금 특례	보호결정 당시 만 50~60세 미만인 자가 가입 기간 5년을 채우면 노령연금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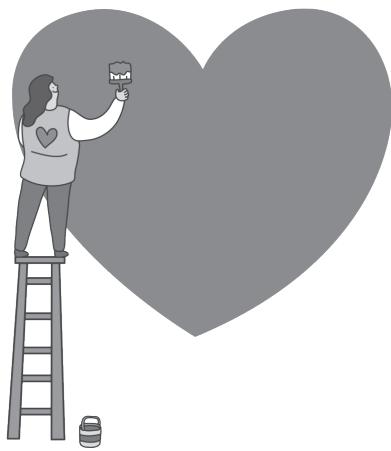
3.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4. 문의



· 생계급여·의료급여 : 동 행정복지센터
· 연금특례 :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031-488-2741)



특수한 상황이나 어려운 입장에 처했나요?

기타 특수 및 위기상황 지원



• 통합문화이용권

1. 대상

6세 이상(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내용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활동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1인 1매, 연간 10만 원) 발급

- 문화예술 :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문화체험 등
- 국내여행 : 교통수단, 관광지, 테마파크, 숙박, 지역축제 등
- 체육활동 : 스포츠관람, 체육시설, 체육용품 등

※ 문화누리카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며, 가맹점 현황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3.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규발급 또는 카드 재충전 신청(신분증 지참)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 또는 문화누리카드 앱[카드발급]에서 신규발급 또는 카드 재충전 신청(본인 인증 필요)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에서 전화(ARS) 재충전 신청
※ 만 14세 이상, 유효기간 '22년 이후 카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알뜰폰의 경우 LGU+만 가능)

4. 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카드 발급/사용 관련 일반 문의)
- NH농협카드 고객센터(☎1644-4000, 수령등록, 잔액확인, 분실신고 등)

알려드립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은 2021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 다만, 발급기간 이내인 경우라도 지역별 예산이 소진된 경우 조기 마감됩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

(이월 및 현금인출 불가) 반드시 12월 31일 이전에 사용해 주세요.



자주 하는 질문

Q. 제 문화누리카드에 지원금이 자동재충전이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자동재충전 완료 후 1.28~1.31 휴대폰으로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가 발송됩니다. 또한 2021.2.1. 이후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온라인(홈페이지), 고객센터(ARS),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전화 혹은 방문하여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통해 재충전 여부 확인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 후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사용 및 잔액확인] 메뉴

· 고객센터(1544-3412)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21.2.3~)을 다운로드하여 가입(인증) 후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Q. 올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중간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카드사용을 못하나요?

A. 지원금을 받은 후 중간에 자격이 상실되어도 당해 연도 사용기간(12.31)까지는 지원금으로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명의자 사망 시 카드사용 불가).

Q.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이외에 본인충전금을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A. 문화누리카드 앞면의 가상계좌번호에 본인충전금을 입금하여 충전 가능합니다.(1회 100원 이상, 10만 원 한도, 연간 누적 200만 원까지 충전 가능)

A. 가상계좌에 충전된 본인 충전금의 잔액은 카드 유효기간 내 언제든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은 반드시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신분증 및 카드 지참)

Q. 다른 카드 지원금(잔액)과 합산이 가능한가요?

A.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카드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의 카드에 지원금을 합산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각각의 개인카드 발급 후 합산이 가능합니다.

A.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당해 사업연도 내에서 합산된 카드는 재분리 되지 않습니다.

A. 주요 가맹점 할인혜택 제공은 카드당 할인매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합산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 한 번 발급받은 카드는 유효기간 내(최대 5년) 지원금을 재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자동재충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합산카드(합산 대상이 된 카드)를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해야 합니다.

Q.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A. 문화누리카드는 해당 개인에게 발급되는 카드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해당 카드 중지 및 향후 발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문화누리카드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한가요?

A. 문화누리카드로 상품권구매(문화상품권 포함)는 불가능합니다. 단 영화관람권은 구매 가능합니다.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부터 자동재충전 제도가 시행됩니다.

2020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1년 지원금(10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자동재충전 기간 : 2021.1.28.(목)~1.31(일), 대상자 문자 안내

• 평생교육바우처

1. 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 내용

지원인원 15,000명 내외, 1인당 연간 35만원(우수이용자의 경우 연간 70만 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원

* 바우처 소진을 및 이수현황에 따라 우수이용자를 선정하여 35만 원 재충전

※ 단,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충복수혜 불가

사용가능 교육	지자체 평생학습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에서 운영되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한 학력취득교육 및 자격증 취득 교육,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평생교육강좌 수강 가능
사용가능 기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www.llcard.kr 를 통해 사용기관 확인 가능)

3. 방법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card.kr) 신청·접수 ⇒ 바우처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수령 ⇒ 교육기관 수강 신청 및 과정 수강

※ 온라인 신청 접수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을 방문해 신청·접수 절차를 도움 받을 수 있음

4. 문의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card.kr)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바우처 콜센터(☎1600-3005)

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이란?

- 평생교육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인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평생교육강좌 수강이 가능한 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평생교육바우처는 평생교육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바우처 카드를 활용하여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 제도

1. 대상

- 중위소득 125%(4인 기준 609만 5,000원)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 중위소득 150%(4인 기준 731만 4,000원) 이하 농·어업인

2. 내용

민사·가사·행정·현법소원심판 등의 소송대리, 소송서류 무료작성(단, 1,000만 원 이하의 간단하고 명백한 사건),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 형사 무료변호 지원

증위소득 기준	대상자구분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소송 비용
125% 이하	국민	유료	유료
	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	무료	무료
	장애인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무료	유료
	전시납북자 가족		
	영세당배소매인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외국인여성포함)		
	미혼부		
	소상공인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재산)		
	소액임차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학교폭력피해자		
경찰소방공무원			
예술인			
재도전기업인			
국내거주 외국인		무료	무료
범죄피해자(신체)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소득제해근로자 등(경남 소재 사업장)			
선원(국내거주외국인포함)			
한부모가족 (취약계층)			
가족관계미등록자			
소년소녀가장			
보호대상아동			

		한부모가족(양육, 인지)	
125%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자 유족, 의상자 가족	
		결혼이민자·귀화허가자	
		개인회생/파산·면책신청대상자	
		자소득 교통사고 피해자	무료
150%이하		농업인·어업인	무료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임금피해근로자(국내거주외국인포함)	
예외		임금피해선원(국내거주외국인포함)	
		법원소송구조사건 피구조사	
		국선대리인 선정사건의 청구인	
		불법사금융피해자	

3.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4.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산출장소 (☎ 031-482-2769, www.klac.or.kr)

알려드립니다

공단에서 도와드리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사건(예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과 가사사건(예 : 이혼, 재산분할 등)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 채무자대리인 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사건
- 형사사건(예 : 절도, 강도 등)
- 성범죄 ·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선임 특례 사건
- 운전면허정지 ·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 회원기관 소개

(2021.09.07. 기준. 46개 기관)



구분	단체명	대표자	TEL	FAX	주소
아동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	이은주	314-1900	313-2573	시청로68번길 30 이즈라이프 204-4호
	시흥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김득수	431-2008	431-2040	신천로 44번길 9 2층(신천동)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이필승	316-1391	316-4648	비둘기 공원 7길 83 2층(대야동)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시흥다어울김아동센터	도기옥	362-5661	070-4009-2829	큰솔로 67-8, 2층 사무실(정왕동)
장애인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 시흥시지부	김민수	312-7070	404-0231	은행로173번길 14 평생학습센터(대야동)
	사)시흥시장애인정보학협회	민종기	319-6260	319-6257	봉우재로12 이철신경외과 5층 (정왕동)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시흥시지부	안덕희	314-0330	314-3601	허중로 193 조은프라자 4층 402호 (하중동)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시흥시지부	박희량	404-6730	404-6732	대은로92 대양빌딩 401호(은행동)
	시흥시장애인보호작업장	유동춘	499-7060	499-7040	마유로82번길 117(정왕동)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한은애	313-0693	313-0694	비둘기공원7길 45 트원빌딩B동 401호(대야동)
	시흥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수꽃다리)	김민수	070-4496-4996	498-1231	마유로416 월드프라자 3층 306호 (정왕동)
	노리터장애인보호작업장	박영춘	313-0402	317-0402	은행로 164 세화빌딩 203호 (대야동)
	청소년여성여성	김광석	404-7141	404-7143	신천로79번길 21 1층(신천동)
지역사회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최정은	313-0473	314-1309	비둘기공원7길 51 대병프라자 7층 (대야동)
	도창교육복지센터	김주석	315-4482	314-4483	매화로 97 제일상가 3층 (도창동)
	사)시흥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김윤환	431-1365	497-0400	오동마을로6번안길 34 금강빌딩4층 (정왕동)
	새오름호스피스	민한근	314-9809	314-9843	비둘기공원7길 83 힐탑메디칼프라자 3~4층(대야동)
	시흥시니어클럽	이순남	319-5579	319-7579	월곶중앙로 30번길 4 주영프라자 501호(월곶동)
	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김선미	313-2733	315-2784	대은로5 한국빌딩 6층(대야동)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유병훈	497-7151	499-7294	봉우재로23번안길 9-5(정왕동)
	시흥시1%복지재단	성낙현	435-2351	435-2352	새재로7번길 6-1 장현빌딩2층(장현동)
	시흥시가족센터	강은이	319-7997	432-7997	정왕천로449번길 51 2층(정왕동)
	열린자리어린이집	유미영	319-0102	432-7312	정왕대로233번길 27(정왕동)
	시흥희망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박완규	311-6655	312-4680	은행로167번길 12 4층(대야동)
	시흥시복부장애인보호작업장	박찬호	313-5238	313-5239	포도원로109번길 10-1(신천동)
	사)한국효도회 시흥지역회	김규성	070-4126-0145	313-0567	능곡서로 27 LH4단지 403동 1층(능곡동)
	사)시흥시자원봉사센터	김운영	312-7792	312-7793	호현로 72 시흥시사회단체센터 4층 (대야동)

구분	단체명	대표자	TEL	FAX	주소
복지관	거모종합사회복지관	이재경	493-6347	493-6349	군자로466번길 37(거모동)
	대야종합사회복지관	고일웅	404-8112	404-8115	호현로55(대야동)
	목감종합사회복지관	강점숙	403-0110	403-0196	목감초등길45(조남동)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홍갑표	431-9114	431-9124	정왕대로233번길 27-1(정왕동)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손현미	313-6249	317-7120	시흥대로1087(신천동)
	정왕종합사회복지관	강대봉	319-6195	319-6194	정왕대로233번길 27(정왕동)
	함현상생종합사회복지관	김수현	434-8040	434-8044	함송로29번길 67(정왕동)
사회복지시설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이선미	404-3100	404-3122	장현능곡로214(능곡동)
	송암동산	김나나	498-5326	433-5326	사미길90(거모동)
	비전하우스	윤형영	488-9780	488-9783	황고개로293번길 16(군자동)
	평안의집	김재은	313-2852	313-4349	미산로 127번길 10-8(미산동)
	엘림양로원	윤정숙	315-6227	315-0524	도두머리길4(도창동)
	이화실버케어	강성비	504-5551	504-5554	비둘기공원로8 시흥메디컬4,5,10층 (대야동)
	베다니마을 뜨란채쉼터	강선희	070-8818 -6964	311-6967	수인로3465번길 23(신천동)
	임마누엘요양원	이순삼	317-3694	317-3894	하중로136번길 14(하중동)
	선한이웃복지원	신광태	433-1577	404-2201	봉우순환로113번길 10-3(정왕동)
	에덴공동체	윤석규	312-9932	312-9593	문화마을로5번길 6-1(신천동)
의료법인 에스앤케이 의료재단 시흥에스앤케이요양병원		선영배	507-8080	507-8084	호현로40번길 5(대야동)
함현상생은빛사랑채		김순애	432-1826	432-6501	함송로 29번길 67번지(정왕동)



발행일 2021. 09. 07

발행인 리은주 회장

편집인 시흥시사회복지정보센터

발행처 **SSN**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